

'91 회계 연도 특수건물 안전점검 결과 분석

보 고는 한국화재보험협회가 1991 회계 연도 중 ('91.4.1 ~ '92.3.3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주 등 전국 7 대 도시에서 실시한 특수건물의 화재 안전점검 결과를 종합, 분석 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1 항의 '특수건물'에는 협회 안전점검 업무의 주 대상인 특수건물의 일반 현황 분석 결과를, 2 항의 '방재시설'에는 연소방지시설 등 주요 방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소화설비 할인검사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3 항에서는 결론을 유도하였다.

여기서 특수건물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주, 성남,

유 희 동 <위험관리부 대리>



수원, 부천 및 울산지역에 소재하는 6층 이상의 건물과 국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홍행장, 숙박업소, 공장, 아파트,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거주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과 재산의 피해

해가 크거나 사회적 물의가 크다고 예상되어 화재 예방 안전점검과 보험 가입의 의무 등을 법률로 정한 건물을 말한다. (단, 성남, 수원, 부천, 울산지역은 '92 회계 연도부터 적용되므로 분석에서 제외됐음)

1. 특수건물

가. 특수건물이 1만5천8백35 건으로 감소

'91 회계 연도말 현재 특수건물은 '90 회계 연도 5만4천2백38 건보다 3만8천4백3 건이 감소한 1만5천8백35 건으로 집계되었다. ((표 1) 참조)

이는 신규 물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화보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 일부 소형 건물이 특수건물에서 제외 되었기 때문이다.

나. 서울에 특수건물의 41.1% 편중

〈표 1〉 연도별 특수건물 현황

구 분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특수건물수	15,210	17,024	18,411	20,393	23,214	26,061	28,444	31,839	37,677	45,589	54,238	15,835
증가 건수	-	1,814	1,387	1,982	2,821	2,847	2,383	3,395	5,838	7,912	8,649	△38,403

〈표 2〉 지역별 특수건물 현황

지 역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전 주	계
물건수	30,087	10,955	4,875	3,817	2,107	1,694	703	54,238
	6,515	3,397	2,346	1,938	657	670	312	15,835
구성비 (%)	55.5	20.2	9.0	7.0	3.9	3.1	1.3	100
	41.1	21.5	14.8	12.2	4.2	4.2	2.0	100

점검 1, 2, 3부 및 위험관리부가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서울의 특수 건물은 6천5백19 건으로서 전체 물건수 1만5천8백35 건의 41.1%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부산 3천3백97 건(21.5%), 대구 2천3백46 건(14.8%), 인천 1천9백38 건(12.2%) 순으로 나타났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보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 저층 및 소규모 건물이 특수건물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체 특수건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서울을 제외한 기타 지역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서울은 55.5%에서 41.1%로 감소하였다.

다. 공장이 특수건물의 38.8% 차지

공장이 5천3백46 건으로서 전체 물건수 1만5천8백35 건의 33.8%를 차지하고 있으며 6층 이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일반건물(주로 사무실 또는 복합용도 건물)과 아파트가 각각 25.2%, 22.0% 순으로 나타났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물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 회계 연도에는 4층 이상의 건물이 75.1%, 공장과 아파트가 각각 9.5%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91 회계연도에서는 공장, 6층이상, 아파트의 순으로 나타났다.

2. 방재 시설

가. 양호율은 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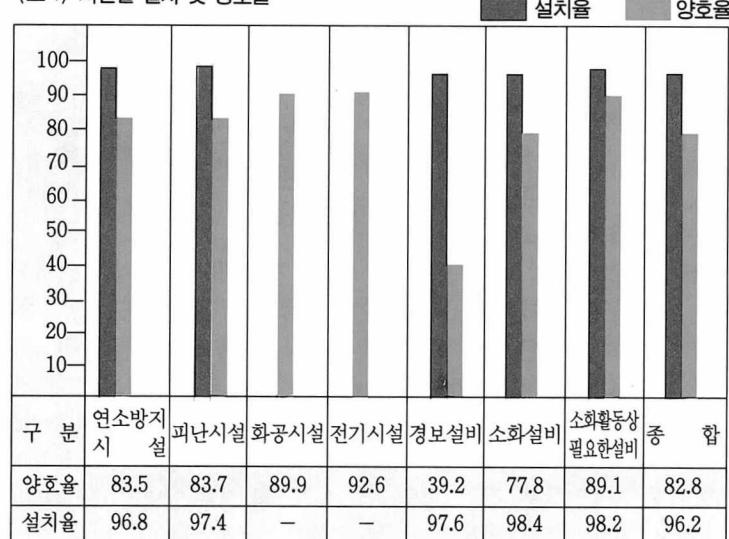
방재 시설은 분석의 편의상 7개 항목 즉, 연소방지시설, 피난 시설, 화공시설(화기사용시설, 가연성 가스시설, 위험물시설 등), 전기시설,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로 분류하였다.

〈표 3〉 업종별 특수건물 현황

구 分	물건수		구성비(%)		증감률(%)	'90회계 연도 업 종
	'90	'91	'90	'91		
국 유	741	749	1.4	4.7	1.1	
학 원	137	137	0.3	0.9	0	사설 강습소
병 원	295	299	0.5	1.9	1.4	
6 층 이 상	40,706	3,995	75.1	25.2	△90.2	4 층 이 상
호 텔	277	290	0.5	1.8	4.7	
공 연 장	127	163	0.2	1.0	28.3	
방 송 시 설	19	19	0.1	0.1	0	촬 영 소
유 흥 접객업	99	71	0.2	0.4	△28.3	유 흥 음식점
학 교	475	265	0.9	1.7	44.2	
공 장	5,167	5,346	9.5	33.8	3.5	
시 장	779	782	1.4	4.9	0.4	
옥내판매장	241	250	0.4	1.6	3.7	
아 파 트	5,175	3,469	9.5	22.0	33.0	공동주택
계	54,238	15,835	100	100	70.8	

△는 감소를 나타냄

〈표 4〉 시설별 설치 및 양호율



관계 법규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모든 방재 시설의 설치율은 96.2%이고, 양호율(양호 건물수 ÷ 설치 대상수 × 100)은 82.8%로 집계되었다.

나. 경보설비가 가장 불량

7개 항목으로 분류된 방재 시설 중 전기시설과 화공시설의 양호율이 각각 92.6%, 89.9%로 높

은 반면 화재의 조기 발견과 경보를 위한 경보설비의 양호율은 39.2%로서 기타 설비에 비하여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4〉참조)

다. 옥내판매장, 시장, 유통점객

업의 설비 상태가 불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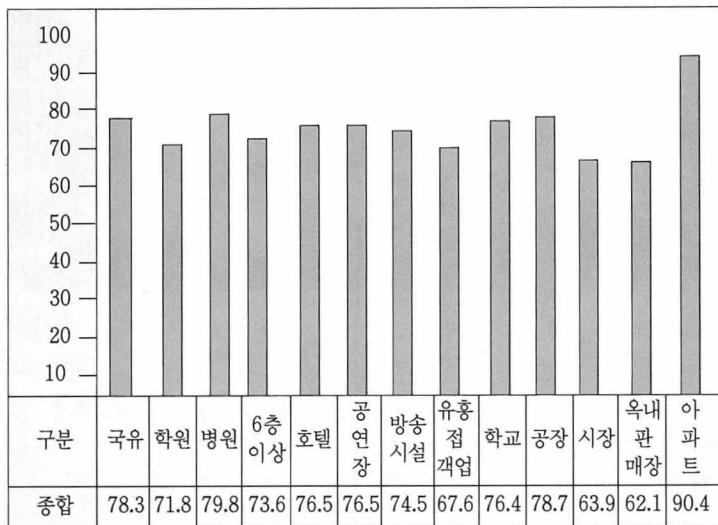
방재 시설의 설치 상태를 건물의 용도별로 살펴보면, 한정된 인원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가장 양

호(양호율 90.4%)한 반면,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옥내판매장, 시장, 유홍접객업의 양호율이 각각 61.1%, 63.9%, 67.6%로서 낮게 나타났다.(〈표 5〉참조)

라. 소화설비 할인

'91 회계 연도중 본 협회가 실시한 소화설비 할인검사에 합격하여 보험 요율의 할인을 받은 건물은 특수건물이 8백55건, 비특수건물이 2백46건으로 집계되었다. 특수건물의 경우, 점검건수 1만5천8백35건에 대한 할인 실적 비율은 5.4%이며, 비특수건물은 요청 건수(할인검사 실시 건수)1백88건 대비 할인 실적 비율은 85.

〈표 5〉 용도별 양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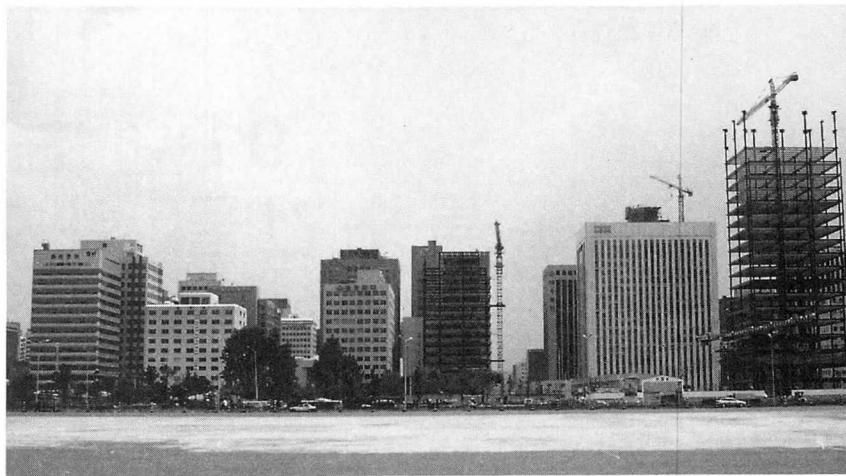


〈표 6〉 소화설비 할인 실적

구 分	특수건물		특수건물		합 계	
	할인 건수	합계	할인 건수	할인 동수	할인 건수	할인 동수
건 수	'91	855	1,143	246	406	1,101
	'90	1,062	1,535	265	505	1,327

〈표 7〉 소화설비별 할인 건수

구 分	자동화재 탐지설비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기 타	계
할인 건수	649	375	31	43	45	1,143
구성비	56.8%	32.8%	2.7%	3.8%	3.9%	100%



4%로 집계되었다.(〈표 6〉참조)

설비별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수동화재경보설비 기능 포함)가

6백49동으로 가장 많았으며, 옥내소화전설비가 3백75동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표 7〉참조)

3. 결론

1975년도부터 화협이 안전점검 결과 분석을 시작한 이후 전체 방재 시설의 양호율이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집계된 것은 1979년도로서, 이때의 양호율은 49.8%였다. 12년이 지난 1991회계연도의 방재 시설 양호율이 82.8%이므로 그동안 무려 33.0%의 방재 시설이 개선된 셈이다. 따라서 화협의 안전점검 업무는 보험이익의 사회 환원과 국가 방재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화보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특수건물 중 일부 소형 건물이 제외되고 일부 지역(성남, 수원, 부천, 울산)이 추가 적용됨에 따라 1992회계 연도를 다시 통계 기준 연도로 삼아 안전점검 결과의 전산화를 통해 보다 더 정확히 분석해서, 특수건물의 일반현황, 방재시설의 개선 현황 및 보험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점검의 효과를 측정해서 보험업계의 사회적 국가 방재 대책 수립 등에 기여하고자 한다. ☺